Yulchon Legal Update

2025.02.

금융회사가 알아야 할 AI 기본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제정안이 지난 2024. 12. 26. 국회를 통과하여, 2026. 1. 22.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AI 기본법 제정으로, 한국은 「유럽연합(이하 "**EU**")의 인공지능법(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이하 "**AI**" 또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을 갖춘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편, 그간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의 AI 활용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 안내서[1]등(이하 통칭하여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일정한 기준, 방향 등을 제시해왔으며, 그에 따라 금융회사는 여신심사, 마케팅, 고객관리 등 업무 전반에 걸쳐 AI 도입을 추진·확대해 왔습니다.

AI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AI 도입, 운영 과정에서도 동법의 적용이 예상되는바, 금융회사는 기존 가이드라인 등과 함께 AI 기본법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AI 도입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i) 금융회사가 유의해야 하는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서, (ii) 금융회사의 AI 기본법 도입과 관련한 주요 고려사항, (iii) 기존의 가이드라인 등과 AI 기본법과의 관계, (iv) 향후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금융회사가 유의해야 하는 AI 기본법의 내용

AI 기본법에서는 인공지능사업자[2]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AI 기본법상 인공지능이용사업자(직접 개발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로서 동법상 인공지능사업자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러한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인공지능사업자로서 유의할 필요가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 Areas

금융규제

기업법무 및 금융

Contact

김시목 변호사
02-528-5764
smkim@yulchon.com

정세진 변호사
02-528-5777
sjjung@yulchon.com

이나영 변호사
02-528-5997
nylee@yulchon.com

장재완 변호사
02-528-6172
jwjang@yulchon.com

1)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2021.7월), 「금융분야 AI 개발·활용 안내서」(2022.8월), 「금융분야 AI 보안 가이드라인」(2023.4월)

2)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①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인공지능개발사업자) 및 ② 인공지능개발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인공지능이용사업자)를 의미합니다(AI 기본법 제2조 제7호).

○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사실 고지 의무**: 인공지능사업자인 금융회사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하며(제31조 제1항), 사전 고지 의무 위반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43조 제1항 제1호).

○ **생성형 인공지능 표시의무**: 인공지능사업자인 금융회사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제31조 제2항).

○ **안전성 확보 의무**: 인공지능사업자인 금융회사는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32조 제1항, 제2항).

○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의무**: 인공지능사업자인 금융회사는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합니다(제33조 제1항).

○ **고영향 인공지능 안전성·신뢰성 확보 의무**: 인공지능사업자인 금융회사는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제34조 제1항).

2. 금융회사의 AI 기본법 도입과 관련한 주요 고려사항

가.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해서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AI 기본법 제33조, 제34조 등). 이 때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일정 영역'에 활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AI 기본법 제2조 제4호).

AI 기본법에서는 '일정 영역'의 하나로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하는 영역(AI 기본법 제2조 제4호 사목, 이하 "**본건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는 인공지능을 활용함에 있어, 규제 부담을 고려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분야가 본건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AI 기본법의 구체적인 해석이 없으므로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금융회사가 여신 심사에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외에도 대출 비교 추천, 보험 모집 행위 등도 대출 심사에 준하여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를 하는 영역으로서 본건 영역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구체화되는 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다른 개별 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AI 기본법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I 기본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AI 기본법 제5조), 이때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다른 법령과 AI 기본법간 충돌되는 부분은 없는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등 위탁관련 규정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개인인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 및 일정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자동화된 결정(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정(결과) 등을 거절하거나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6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2 내지 제44조의4 및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1조의2].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을 공개해야 하는 바(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4), 금융회사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개인인 정보주체에 대해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여 자동화된 결정(여신 심사 등)을 하는 경우, AI 기본법 외에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준수사항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내지 겸영업무에 해당하는지 혹은 부수업무 내지 겸영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행이 가능한 업무인지,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조치와 전자금융거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간의 관계 등을 주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의무(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가 적용되는 금융회사의 경우, AI 기본법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AI 기본법 제36조)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기존의 가이드라인 등과 AI 기본법과의 관계

금융감독당국은 AI 기본법 제정 전부터 금융산업에서의 AI 활용 활성화를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AI 활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등을 발표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 7월에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2022년 8월 '금융분야 AI 개발·활용 안내서', 2023년 4월 '금융분야 AI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최근 각 가이드라인 등을 통합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계획을 발표(2024. 12. 12) 하였습니다.

AI 기본법이 도입됨에 따라, 현 상황에서 향후 기존의 가이드라인 등의 적용 범위 및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 방향을 명확히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금융회사의 AI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금융감독당국이 AI 기본법의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규제를 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기존의 가이드라인 등과 AI 기본법이 상호 중복되는 내용 및 가이드라인 등과 AI 기본법이 별개로 규제하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업무에서의 AI 활용 및 AI 기본법 시행에 대한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AI 기본법과 가이드라인 등을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과의 비교

금융분야 AI 운용 가이드라인과 AI 기본법은, AI 활용에 대해 폭넓게 규율하고 있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분야 AI 운용 가이드라인	AI 기본법
AI 시스템 정의: 특정 목표가 주어진 상태에서, 데이터를 획득하여 환경을 인식하고, 획득된 데이터를 해석하며, 지식을 추론하거나 정보를 처리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행동을 결정함으로써 물리적 또는 디지털 차원에서 작동하는 인간이 설계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시스템	AI 시스템 정의: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제2조 제2호)
▶ AI 시스템을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나, 양자 모두 이를 폭넓게 정의하고 있어, 금융회사가 AI를 활용하는 경우 어느 쪽 정의에 따르더라도 AI시스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금융서비스 및 금융상품의 제공을 위한 업무에 AI 시스템(고영향/생성형 무관)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금융회사에 적용되며(금융회사 내부 직원관리, 단순 업무 효율화 등 AI 시스템 활용으로 고객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 제외), AI 시스템 개발, 평가, 운영, 모니터링 전 단계를 규율	AI 기본법에서는 고영향 AI, 생성형 AI 위주로 금융회사(인공지능사업자)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금융회사가 AI 활용하는 경우 금융분야 AI 운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때 금융회사가 활용하는 AI가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인 경우 AI 기본법에 따른 추가적인 규제를 부담하는 구조가 될 수 있음.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는 금융서비스 등에 AI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개발단계에서부터 설명가능성을 고려하고, 적절한 인공지능 기술을 투명하게 적용하여 맥락에 맞는 설명이 도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AI 시스템의 안정성·신뢰성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명가능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제31조 제1항),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제31조 제2항).
▶ 금융회사는 타 업권과 다르게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업권별 개별 법령 등에서 규정한 설명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AI 활용시 AI 기본법에서 요구하는 고지·표시의무 외에도 AI 활용과 관련한 추가적인 관련 의무·권고등(설명의무 이행 개선 등)이 요구될 수 있음.	

□ 금융분야 AI 개발·활용 안내서와의 비교

금융분야 AI 개발·활용 안내서에서는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점검항목과 체크리스트의 형태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기본법과의 주요 차이점은 금융분야 AI 운용 가이드라인에서 살펴본 바와 동일할 것입니다.

다만, AI 기본법에서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제32조), 고영향 AI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의무(제34조)를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규정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로서는 관련한 의무, 권고 등의 이행을 위해 AI 기본법 하위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내용들과 금융분야 AI 개발·활용 안내서의 체크리스트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분야 AI 보안 가이드라인과의 비교

금융분야 AI 보안 가이드라인은 금융분야에서 사용되는 AI 서비스의 안전한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 AI 활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AI 기본법에서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AI 기본법 상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의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규정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로서는 관련한 의무, 권고 등의 이행을 위해 AI 기본법 하위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내용들과 금융분야 AI 보안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금융분야에서의 AI 활용시의 보안, 안전성 등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 AI 기본법 관련 향후 동향

AI 기본법은 AI 관련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기본법이므로, 향후 산업 및 기술의 변화, AI 관련 분쟁 등의 발생, 다른 국가의 입법 동향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이 보다 구체화되고 규제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2024년 12월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종전의 금융분야 AI 관련 가이드라인을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으로 단일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가이드라인 등과 관련한 논의, 수정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위 발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4. 12. 26.자 Legal Update [**바로가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정부에서는 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출범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입니다(2025. 01.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 자료).

< 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 주요 사항 >

- AI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고영향 인공지능 기준과 예시에 관한 방침(가이드라인)(제33조)
-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 방침(가이드라인)(제34조)
-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고시(제32조)
- 인공지능 영향평가 방침(가이드라인)(제35조)
-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방침(가이드라인)(제31조)

따라서, 금융회사는 하위법령 정비 동향을 살펴보면서 AI 기본법 시행을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에도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율촌의 **금융규제팀**은 다양한 형태의 금융 AI 서비스 및 관련 규제와 관한 최적의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AI 기본법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응 방안, 금융분야 AI 규제, 금융권 AI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YULCHON 律村 YULCHON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유) 율촌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Copyright 2025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